

## 제8절 각종 권리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 1. 공탁금출급청구권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

○○지방법원 ○○시법원 99년금제1226호, 공탁자 ○○시장, 피공탁자 원고로 된 공탁금 21,327,460원 중 1,266,938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

확인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② 피공탁자가 피공탁자 아닌 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수령하면 되는 것이고, 구태여 피공탁자가 아닌 위 소유권 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

소외 주식회사 ○○백화점이 2012. 2. 7. ○○지방법원 2012년 금 제993호로 한 공탁금 80,219,072원, 같은 해 3.5. 같은 법원 2012년 금 제1764호로 한 공탁금 73,124,861원, 소외 ○○쇼핑주식회사가 같은 해 3.20. 같은 법원 2012년 금 제2498호로 한 공탁금 443,364,393원에 대한 각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은 채권과 채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우선순위 사용자에게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양도인 이상 양도인에 대한 채납처분으로 그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채권양도와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한하여 그 압류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통지의 선후에 상관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법 1993.12.8. 선고 93나11373 판결)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경우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 또는 승낙을 한다 함은 통지행위나 승낙행위 자체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채권양도통지 자체를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경우에는 통지행위 자체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1987.9.25. 선고 87가합1585 판결)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

피고가 200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금제12345호로 공탁한 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②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및 이 경우 공탁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로 기재했다라도 그 공탁을 같은 항제2호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 기재하고 공탁 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공탁통지서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공탁을 하게 된 관계 법령'의 기재가 사실에 합치되지 아니하지만 그렇다고 위 공탁이 바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존재하면 그 공탁을 유효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그 공탁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허용되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③ 변제공탁제도의 기본 원리

변제공탁제도는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는 변제자를 위한 제도로서 그 공탁이 국가의 후견적 관여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공탁제도는 채무자(공탁자)가 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를 지며(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2항 (바)목, 제20조 제3항, 제27조의2)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고 채무자가 지정해 준 채권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같은 규칙 제29조, 제30조)을 그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④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하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취지 및 그 규정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의해 기업자의 채권자 지정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는 토지수용의 주체인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허용됨을 규정하여, 기업자는 그 공탁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신속한 수용이 불가피함에도 기업자가 당시로서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임시적 조치로서 편의상 방편일 뿐이므로, 기업자는 공탁으로 수용보상금 지급의무는 면하게 되지만, 이로써 위에 본 공탁제도상 요구되는 채권자 지정의무를 다하였다거나 그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다.

⑤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 수용 토지의 소유자가 공탁금 출급을 위해 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기업자가 보상금 수령권자의 절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자기가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자가 적극적으로 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다고 '부인(否認)'하지는 아니하고 단순히 '부지(不知)'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보상금 수령권자의 지위를 다툰 것이고 언제 다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기업자가 이를 긍정할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공탁제도상으로도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 정보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여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는 위 판결 정보를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청구

(본 소)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공탁금 중 원고 김○배에게 159,474,639원에 대한, 원고 김○식, 김○준에게 각 106,316,427원에 대한, 원고 김○숙에게 26,579,107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반 소)

1. 별지 제1목록 기재 공탁금의 수령권자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임을 확인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김○배는 15분의 6지분, 원고 김○식, 김○준은 각 15분의 4지분, 원고 김○숙은 15분의 1지분별로 ○○지방법원 ○○등기소 1997. 4. 16. 접수 제1130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김○배는 15분의 6지분, 원고 김○식, 김○준은 각 15분의 4지분, 원고 김○숙은 15분의 1지분별로 1978. 7. 29. 또는 선택적으로 1988. 7.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판례] [1] 부동산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명의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

[2] 부동산 경락인이 전 소유자와 사이에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줄 뿐 경락에 따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위 합의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 즉시 전 소유자에게 넘겨주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경락으로 말소될 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

소외 ○○개발공사가 ○○시 ○○동 599-1 답 2,284㎡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008. 10. 20. ○○지방법원 ○○지원 2008년 금 제1451호로 변제공탁한 13,161,350 원은 선정자 김○○ 및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2,299,202원씩의, 선정자 최○○, 최○○에게 각 383,200원씩의, 선정자 최○○, 최○○, 최○○에게 각 1,532,801원씩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청구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강, 문○○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백화점이 2009. 1. 21. ○○지방법원 2009금 제484호로 공탁한 물품대금 74,384,109원 중 72,826,882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백화점이 2009. 1. 21. ○○지방법원 2009금 제484호로 공탁한 물품대금 74,384,109원 중 72,826,882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 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②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가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공탁금 수령권자가 상대적으로 불확지한 경우, 피공탁자들 상호간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의하여 공탁금 수령권자가 정하여지면 그 확정판결정본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탁금의 수동적 운영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정본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서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아 그 판결정본을 가지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의 국가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는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서울지법 1999. 7. 7. 선고 99가합39611 판결)

### ☐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청구

소외 대한○○공제회가 2008. 5. 21. ○○지방법원 2008년금제23429호로 공탁한 공탁금 187,332,9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승계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약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대항 여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 양수인인 제3자가 약의인 경우이거나 약의가 아니라도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채권양도 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②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채권 양수인의 약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양수 당사자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특히 양수인이 채권양도 거래의 경험이 없는 개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수수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채권증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통상의 주된 관심사인 채권금액, 채권의 행사시기 등에만 치중한 채 전반적·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밖에 전체 계약조항의 수, 양도금지 특약조항의 위치나 형상 등에 따라서는 채권증서의 내용을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나아가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

③ 임직원이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로부터 임금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양수인이 회사의 임직원들이며 특히 일부는 전무 등 핵심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공2000상, 1271)